

과업지시서

◆ 과업내용은 본 과업지시서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용역 제안서를 따르며, 용역 과정에서 변경 가능

□ 과업내용은 “제안요청서 II. 과업내용” 참조

과업수행지침

□ 일반 사항

- 용역의 성과물에는 제안요청서(과업내용)에서 기술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고, 000(이하 ‘용역사’라 한다.)가 제안한 제안서는 계약의 중요한 일부로서 계약서에 포함되며, 용역사는 전체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용역사는 관련 법규, 정부 정책·지침, 공사의 규정·절차,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 계획서에 따라 합리적으로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시 정부기관, 국내외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본 용역에 반영하여야 함
- 용역사는 최신의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함
- 본 용역과 관련한 회의 등을 위하여 공사는 용역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회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고 공사와 용역사간 사전 협의를 거쳐 진행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사는 이에 따라야 함
- 용역사는 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행정 및 기타업무를 지원하여야 함

□ 과업의 착수

- 용역사는 공사와 협의하여 과업수행책임자를 선임하고 이를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과업수행책임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권한 및 책임을 가짐
- 용역사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지체없이 본 과업수행

지침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과업에 착수하여야 함

- 용역사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1) 과업수행 조직
 - 2) 과업수행 인원 이력서
 - 3) 과업수행 공정표
 - 4) 과업수행방법
 - 5) 세부과업목차
 - 6) 기타 공사에서 요구하는 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 또는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 달성에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세부과업목차에 명기하여야 하며 용역사는 이를 수행하여야 함

□ 공정 보고

- 용역사는 과업진도와 추진내용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사항에는 계획대비 인력투입현황, 추진내용, 추진계획, 과업수행 상 문제점 및 대책, 기타 특기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용역사는 계약기간 중의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공사가 요구할 경우 착수, 중간, 최종 보고회 등을 개최하여야 하며, 횟수·시기 및 내용 등에 대하여는 공사와 협의하여 시행함

□ 용역수행 인원

- 용역사는 과업수행계획서 및 계약서에 따라 용역수행 인원을 투입하여야 하며, 사직,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와 협의하여 동급 또는 차상급 인력으로 변경·선정하여 공사에 통지하며 이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용역기간중 공사의 승인없이 타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상호간 유기적인 업무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공사는 참여인원이 본 과업수행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사는 이에 따라야 함

□ 용역사의 책임

- 용역사는 과업수행기간 내에 본 용역을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관리를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지연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지연 시에는 세부적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용역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 필요할 경우 공사와 용역사간 상호 협의 하에 이를 조정할 수 있음
- 용역사는 계약상 규정된 바에 따라 공사에 제공되거나 또는 공사에 의해 이용된 지적재산권(특허, 저작권 등) 또는 공정 등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해야 하며, 용역사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생하거나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의해 공사 또는 용역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기타의 분쟁, 클레임 등에 대해 용역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대응하여야 함

□ 계약 변경

- 용역 수행중 공사의 방침에 의거 규모의 증감 및 내용의 수정 등 과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은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을 준용하되, 공사와 용역사 간에 합의하여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 계약기간 중 공사의 사업계획 변경이나 주변여건의 변화로 더 이상 용역수행 자체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과업의 일부가 필요 없는 경우 공사는 용역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음

□ 보안 및 비밀유지

- 용역사는 본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보안사항에 대하여 과업 수행중은 물론 과업이 종료된 후에라도 보안유지 책임을 짐
- 용역사는 공사에서 지정한 별도양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중 공사가 제공한 자료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동 자료는 본 용역의 업무수행 이외의 용도에 사용 불가함
- 용역사는 본 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공사의 비밀 및 관련한 각종 자료 등을 용역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일반에 공개할 수 없음
- 용역사가 전항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공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에 의한 처벌받을 수 있음

□ 공사 지원사항

- 과업수행에 필요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사는 관계 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관련 자료를 용역사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용역사는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음
- 공사는 원활한 용역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장소를 제공할 수 있음

□ 용역수행 시 생산 자료의 소유

- 용역수행으로 생산된 각종 자료,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은 공사의 소유물이 되며, 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할 수 없으며, 영업목적 등 용역사의 이익을 위하여 활용할 수 없음
-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2차 저작권 포함)은 공사에 귀속됨

□ 위반행위의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함
 - 1) 공사의 과업 상 요구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2)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지연될 때
 - 3) 용역수행이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

- 공사가 본 용역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한 경우 용역사는 검토를 수행하고 이를 과업 결과에 반영하여야 함
- 공사의 승인·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용역사의 책임으로 오류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용역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용역사는 본 용역 완료 후에도 본 용역에 관련된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보완 및 자료 제출 요청 시에는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재검토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용역 성과품

- 모든 용역 성과품의 형식 및 규격은 공사가 지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작성함

- 모든 제출서류는 아래 한글, 엑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과업 수행 중 결과물 산출을 위해 수집된 자료 또는 프로그램은 공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계약기간 동안 제출해야할 성과품은 다음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그 종류·수량 등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

번호	항 목	규격	형식	제출시기	비고
1	착수보고서	A4	전자파일	계약후 10일 이내	
2	최종보고서	A4	전자파일	행사종료 후 14일 이내	
3	기타(정산내역 등)	A4	전자파일	계약 종료 시까지	

과업수행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름

